외국상법에 규제된 상사법률관계당사자

정 선 경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시장이 없어진 변화된 환경에서 우리는 자본주의시장을 대상하여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켜나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습니다.》(《김정일선집》 중보판 제19권 212폐지)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데서 다른 나라들에 존재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상사법률관계당사자들에 대하여 잘 알고 그에 맞게 능란하게 사업을 진행해나가는것은 대외경제관계에서 제기되는 법률적문제들을 우리 혁명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외국상법에 규제된 상사법률관계당사자들가운데는 회사, 조합, 개인기업 등 여러가지가 있다.

외국상법에 규제된 여러가지 형태의 상사법률관계당사자들가운데서 회사는 어느 나라 에서나 할것없이 가장 중요한 상사법률관계당사자로 인정되고있다.

세계적으로 회사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또 나라들마다 회사의 의미에 대한 법적 정의도 각이하다.

일반적으로 대륙법계나라들에서는 회사를 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여러 출자 자들로 무어지는 사단법인이라고 정의하고있다.

회사에 대한 이와 같은 정의는 회사가 법에 따라 설립된다는것, 회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것, 회사가 단체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것을 강조한다. 일본상법에서는 회사를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는 사단법인》이라고 규정하는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나 경영행위를 업으로 하지 않는 사단》도 상법에 따라 회사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이와 대비할 때 영미법계나라들에서는 대륙법계나라들에서와 달리 회사에 대하여 법으로 명확히 정의하지 않고있다. 그러나 영미법계나라들의 상법리론이나 회사법리론에 따라 그리고 이 나라들의 관련법들의 규정에 관통되여있는 내용을 분석해볼 때 회사의 개념은 대륙법계나라들과 크게 차이가 없다. 다만 영리성과 법인성에 대한 규정에서 약간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여 영미법계나라들에서 말하는 회사란 법에 따라 설립되여 회사의 발기인, 리사, 주주들과 분리되여있는 법인단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법인단체는 영리성을 가지고있는 가지고있지 않는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성립되었는간에 관계없이 모두 회사로 간주된다. 영국의 1985년 회사법 제1조에서는 《둘 혹은 그 이상의 성원들이 합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한 유한책임의 회사법인은 사단성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있다. 미국 《표준회사법》에서도 상사회사의 개념에 대하여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하여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 설립되는 단체이다.》라고 규정하고있다.

일부 나라들에서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법에서 명백하게 정의하고있다. 중국은 회사법에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나라들에서의 회사에 대한 개념정의방식을 참고하여 자기 나라

의 실정에 맞게 그 개념을 정의하였다. 즉 중국의 회사법에서는 《회사란 본 법에 따라 중 국경내에 설립되는 유한책임회사 및 주식회사를 말한다.》,《유한책임회사 및 주식회사는 기 업법인이다.》라고 규정하고있다. 웰남의 회사법에서는 《회사는 자본을 공동으로 출자하고 공 동으로 리윤을 나누며 자기가 출자한 자본몫에 해당하여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지는 기 업이다.》라고 규정하고있다.

이렇게 놓고볼 때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규정하고있는 회사에 대한 개념들을 다음과 같이 종합화하여 정의할수 있다. 즉 회사란 법적절차에 따라 설립되여 법인의 자격을 가지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경영활동을 진행하는 기업조직이라고 정의할수 있다.

외국상법에 규제된 상사법률관계당사자로서 회사는 일정한 특징을 가진다.

외국상법에 규제된 상사법률관계당사자로서의 회사의 특징은 첫째로, 회사가 반드시 법에 따라 설립된다는것이다.

회사가 법에 따라 설립된다고 할 때 그것은 회사법이나 상법 및 민법 등 해당 법들에 포함되여있는 회사관련규정에 따라 설립된다는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회사는 반드시 법에 따라 설립되여야 하며 법에 규정된 설립조건과 절차에 의해서만 상사법률관계당사자자격을 취득할수 있다. 물론 조합이나 개인기업과 같은 다른 상사법률관계당사자들도 해당 법들에 따라 설립된다.

그러나 일부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조합이나 개인기업과 같은 기업들이 회사에 비해볼 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설립절차도 비교적 간단한것으로 하여 그에 대한 법적규제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지어 이러한 당사자들을 전문적으로 규제하는 법조차 두지 않고있는 경우도 있다. 프랑스, 도이췰란드, 일본, 영국,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나라들에는 개인기업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규제한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매개 나라들의 회사와 관련한 립법방식과 체계가 서로 다른것으로 하여 회사설립과 관련한 법의 내용도 서로 일정한 차이를 가진다. 《민상합일제》를 취하는 나라들 즉 민법과 상법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민법에 상법을 포함시켜 회사관계를 규제하는 나라들에서는 회사가 민법이나 기타 회사관련법에 따라 설립된다. 이와 반대로 《민상분립제》를 취하는 나라들 즉 민법과 상법을 따로따로 가지고있는 나라들에서 회사는 상법이나 기타 회사관련법에 따라 설립된다.

외국상법에 규제된 상사법률관계당사자로서의 회사의 특징은 둘째로, 회사가 법인의 자격을 가진다는것이다.

일반적으로 회사라는 개념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가 포함된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회사라고 할 때 그것은 법인의 자격을 가지는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만을 가리킨다. 대륙법계나라나 영미법계나라들에서의 회사법에서는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를 다같이 법인이라고 규정하고있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 대해서는 그것이 조합의 성질이 농후하므로 법인으로 인정하지 않는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프랑스와 일본과 같은 일부 나라들의 회사법들에서는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를 법인이라고 규정하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형태의 회사들에 대하여 다같이 법인이라고 하여 법규적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는것이므로 이 나라들에서도 실제적으로는 합명회사와 합자회사가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단체라는데 대하여 부정하지 않고있다. 다시말하여 합명회

사나 합자회사가 형식상사단법인이지 실지에 있어서는 조합과 같으며 그의 법인지위를 인정하는것은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제3자와의 관계를 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다고 본다.

회사의 법인제도는 단체에 대한 법률관계를 단순화하고 회사의 책임재산을 단체의 재산으로 제한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다. 법인으로서의 회사의 형식과 관련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것은 회사가 출자자들과 분리된 일종의 자본련합체이지 조합과 같은 단순한 인적련합 및 모임이 아니라는것이다. 때문에 각국 법률에서는 대체로 회사를 출자자들과 분리되여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법인으로 인정하고있다.

프랑스의 1966년《상사회사법》제5조에서는《상사회사는 회사등기부에 등기된 날부터 법인자격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있으며 일본도 1990년《상법》제2편 회사법 제54조에서 회사가 법인이라고 규정하고있다.

이렇게 놓고볼 때 회사가 법에 따라 설립되여야 한다는것, 독립적인 재산을 가져야 한다는것, 독자적인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는것이 일반적으로 회사가 법인으로 인정되기 위한조건이라고 말할수 있다.

외국상법에 규제된 상사법률관계당사자로서의 회사의 특징은 셋째로, 회사가 둘이상의 성원들로 무어진 단체라는것이다.

회사가 단체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것은 회사가 둘이상 성원들의 모임으로 구성되는 사단이라는것이다. 다른 나라들에서 말하는 사단은 공동의 목적을 위해 조직된 여러명으로 이루어진 단체로서 조합과 같이 성원들의 일반적인 집합체가 아니라 통일적인 결합체, 조직적일체성이 강한 단체를 의미한다.

모든 나라들에서는 회사성원으로는 자연인도 될수 있고 법인도 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도 회사성원으로 된다고 할 때에는 해당 법인도 출자자로서 회사성원으로 된다는것이며 그 법인이 파견한 개별적인 사람이 법인을 대표하여 활동을 하는것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회사종류에 따라 그 성원수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다시말하여 유한책임회사인경우에는 성원수가 대체로 2명이상, 50명이하로 이루어질것을 요구하며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성원수에 있어서 제한이 없다.

회사가 단체로서의 성질을 가지는것과 관련하여 반드시 류의하여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일부 나라들에서 인정되고있는 1인회사에 대해서도 단체적인 성질이 있는것으로 보아야 하겠는가 하는것이다. 1인회사란 말그대로 1명의 주주로 이루어진 회사를 의미한다. 그러나 1인회사제도를 법적으로 규정하고있는 나라들에서는 한명의 주주로 이루어진 1인회사도 주식의 양도로 단체로 될수 있다고 보고 인위적으로 1인회사에 대해서 단체적인 성질을 가진다고 인정하고있다.

외국상법에 규제된 상사법률관계당사자로서의 회사의 특징은 넷째로, 회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것이다.

영리성은 상사법률관계당사자로서의 회사의 기본특징이다. 모든 나라들의 회사법들에 서는 회사가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존재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것은 구체적으로 회사설립목적이 다 리윤획득이라고 보는데서 표 현된다. 중국의 회사법에서는 회사가 자산의 유지와 증가를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것은 이와 함께 회사가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리익 을 그 성원들에게 분배한다는데서 표현된다.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나 그것을 자기 성원들에게 분배하지 않는 조직은 회사로 인정되지 않는 다고 보아야 한다.

외국상법에 규제된 상사법률관계당사자로서의 회사의 특징은 다섯째로, 회사가 개인기 업이나 조합에 비해볼 때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존재한다는것이다.

법인으로서의 회사는 출자자들인 회사성원들과 분리되여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기업이므로 회사성원들의 개인적사정에 구애됨이 없이 계속 존속한다. 다시말하여 회사성원들과 회사가 재산 및 책임과 관련하여 서로 련관이 없이 분리되여있기때문에 주주나 사원의 사망, 퇴사, 파산은 원칙상 회사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미법계나라들의 회사법에서는 회사가 《영속성》을 가지는 단체이고 조합은 《비영속 성》을 가지는 일종의 계약관계라고 본다.

이처럼 회사는 다른 상사법률관계당사자들과 대비해볼 때 법인으로서 그 목적과 존재 기간측면 등에서 자기의 고유한 특징을 가진다.

오늘 자본주의변호론자들은 《주식의 민주화》, 《관리혁명》, 《소득혁명》과 같은 기만적인 선전을 통하여 자본주의가 마치도 《인민적자본주의》로 변모된듯이 사태를 외곡하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한갖 자본가계급의 착취적본성을 가리우려는 위장물로서 자본주의나라 들에서 주식회사를 비롯한 모든 회사들은 대독점자본가들이 근로인민대중을 착취하여 리윤을 획득하는 치부수단으로밖에 달리될수 없다.

우리는 외국상법에 규제된 상사법률관계당사자로서의 회사의 특징을 잘 알고 대외경 제관계에서 제기되는 법률적문제들을 우리 혁명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감으로써 사회주의 경제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